

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신·구조문대비표

변경 전	변경 후	비고
<p>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.</p> <p>1. (생략)</p> <p><신 설></p> <p>2. ~ 6. (생략)</p> <p>7. “연금수령”이란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40조의2제3항에 따른 연금수령으로서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p>8. ~ 10. (생략)</p>	<p>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현행과 동일)</p> <p>2. “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”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234조제1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.</p> <p>3. ~ 7. (현행과 동일)</p> <p>8. ----- -----제17조----- -----</p> <p>9. ~ 11. (현행과 동일)</p>	<p>상장지수집합 투자증권 매 매 도입</p> <p>조문정비</p>
<p><신 설></p>	<p>제4조(위탁증거금) 가입자는 제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(이하 “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”이라 한다)의 거래소에서의 매매거래를 위탁함에 있어 매수대금 전액에 대하여 현금으로 위탁증거금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.</p>	<p>상장지수집합 투자증권 매 매 도입</p>
<p><신 설></p>	<p>제5조(신용거래 등 금지)</p> <p>① 가입자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신용거래를 할 수 없다.</p> <p>② 회사는 가입자의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에 대한 대차거래 또는 그 중개·주선이나 대리업무를 할 수 없다.</p>	<p>상장지수집합 투자증권 매 매 도입</p>
<p>제4조(납입 등)</p> <p>①~② (생략)</p> <p>③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연금수령개시 신청일 이전에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으로 전환해 줄 것을 회사에 신청한 경우에는 제19조의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전환을 신청한 금액을 계좌에서 가장 먼저 인출하여 그 신청을 한 날에 다시 계좌에 납</p>	<p>제6조(납입 등)</p> <p>①~② (현행과 동일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제22조----- -----</p>	<p>조문정비</p>

<p>입한 것으로 본다.</p>	<p>-----</p>	
<p>제5조(예탁금이용료 등의 지급) ① ~ ④ (생략) ⑤ 회사는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매거래 등을 통지할 때 그 변경내용을 함께 가입자에게 알려준다.</p>	<p>제7조(예탁금이용료 등의 지급) ① ~ ④ (현행과 동일) ⑤ -----제9조----- ----- ----</p>	<p>조항변경 및 조문정비</p>
<p>제6조(집합투자증권의 매입 및 환매) ① 가입자는 연금저축계좌 전용으로 설정된 집합투자증권(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연금저축계좌 전용 클래스를 포함한다)에 한하여 매입할 수 있다.</p> <p><신 설></p> <p>②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할 수 있다.</p> <p>1. (생략) 2. 자유적립식 : 적립기간을 정하여 임의의 금액 또는 좌수를 수시로 매입 3. 임의식 : 적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임의의 금액 또는 좌수를 수시로 매입</p> <p>③ 가입자는 언제든지 매입한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환매할 수 있다.</p> <p>④ 제1항부터 3항에 따른 각종 보수 및 수수료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</p>	<p>제8조(집합투자증권의 매매)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집합투자증권에 한하여 매입할 수 있다.</p> <p>1. 연금저축계좌 전용으로 설정된 집합투자증권(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연금저축계좌 전용 클래스를 포함한다) 2. 제1호에도 불구하고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(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하는 지수의 변화에 1배를 초과하거나 음의 배율로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은 제외한다)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</p> <p>②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할 수 있다.</p> <p>1. (현행과 동일) 2. -----수량을----- --- 3. -----수량을----- ---</p> <p>③ 가입자는 언제든지 매입한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환매 또는 매도할 수 있다.</p> <p>④ ----- -----다르며, <별첨>에서 정하는 위탁수수를 적용한다.</p>	<p>상장지수집합 투자증권 매 매 도입</p> <p>문구추가</p>
<p>제7조 (생략)</p>	<p>제9조 (현행과 동일)</p>	<p>조항변경</p>
<p>제8조(가입자의 우대) ①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제6조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한 후 해</p>	<p>제10조(가입자의 우대) ① 제8조-----제8조 -----</p>	<p>조항변경 및 조문정비</p>

<p>당 기간의 경과 후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때에는 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. 다만, 가입자의 요청에 따라 그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기존에 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때에는 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.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	<p>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② ~ ③ (현행과 동일)</p>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 설></p>	<p>제11조(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분배금) 회사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한 분배금을 계좌로 지급한다.</p>	<p>상장지수집합 투자증권 매 매 도입</p>
<p>제9조(인출 등) ① (생략) ② 가입자가 일부 금액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환매할 집합투자증권을 지정하여야 한다. 다만, 계좌 내에 지급 가능한 현금이 있는 경우 그 현금을 우선 인출한다.</p> <p><신 설></p> <p>③ 계좌에서 일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인출한다. 1. ~ 2. (생략) 3. 제19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, 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및 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된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소득</p> <p>④ 제3항제1호의 과세제외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인출한다. 1. ~2. (생략) 3. 제1호 또는 제2호 외에 계좌에 매년 납입한 금액 중 제19조에 따른 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4. 제1호 내지 제3호 외에 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(제10조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에 한하며, 확인</p>	<p>제12조(인출 등) ① (현행과 동일) ② 가입자가 일부 금액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. 다만, 계좌 내에 지급 가능한 현금이 있는 경우 그 현금을 우선 인출한다. 1.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가입자는 환매할 집합투자증권을 지정할 것 2. 제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의 경우 가입자는 인출할 금액에 해당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을 매도 할 것</p> <p>③ 계좌에서 일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인출한다. 1. ~ 2. (현행과 동일) 3. 제22조에----- ----- -----</p> <p>④ 제3항제1호의 과세제외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인출한다. 1. ~ 2. (현행과 동일) 3. -----제22조에----- ----- 4. -----(제13조에)-----</p>	<p>상장지수집합 투자증권 매 매 도입</p> <p>조항변경 및 조문정비</p>

<p>되는 날부터 과세제외금액으로 본다.)</p> <p>⑤ (생략)</p> <p>⑥ 회사는 가입자가 인출할 금액이 제16조에 따른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분을 먼저 인출하고 그 다음으로 연금외수령분을 인출한다.</p> <p>⑦ 회사는 인출할 금액에 대하여 제17조에 따른 세액을 원천징수한 후 가입자에게 지급한다.</p>	<p>-----) ⑤ (현행과 동일) ⑥ -----제19조에----- ----- ⑦ -----제20조에----- -----</p>	
<p>제10조~제12조 (생략)</p>	<p>제13조~제15조 (현행과 동일)</p>	<p>조항변경</p>
<p>제13조(계좌해지) ① (생략)</p> <p>② 회사는 가입자의 해지 신청이 있는 경우 계좌 내의 집합투자증권을 모두 환매하여 제17조에 따라 세액을 원천징수한 후 가입자에게 지급한다.</p> <p><신 설></p>	<p>제16조(계좌해지) ① (현행과 동일)</p> <p>② 회사는 가입자의 해지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호에 의하여 환매 또는 매도된 금액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라 세액을 원천징수한 후 가입자에게 지급한다.</p> <p>1. 회사는 계좌 내에 있는 제8조제1항제1호의 집합투자증권을 모두 환매할 것</p> <p>2. 가입자는 계좌 내에 있는 제8조제1항제2호의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을 모두 매도할 것</p>	<p>조항변경 및 조문정비</p> <p>상장지수집합 투자증권 매 매 도입</p>
<p>제14조(부득이한 인출) ① (생략)</p> <p>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제17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.</p>	<p>제17조(부득이한 인출) ① (현행과 동일)</p> <p>② -----제20조 -----</p>	<p>조항변경 및 조문정비</p>
<p>제15조(계좌의 이체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출로 보지 아니한다.</p> <p>1. 제16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가 제2조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퇴직연금계좌(이하 "개인형퇴직연금계좌"라 한다)로 전액 이체(연금수령이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)하는 경우</p> <p>2. 제16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개인형퇴직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연금저축계좌로 전액 이체(연금수령이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)하는 경우</p>	<p>제18조(계좌의 이체) ① (현행과 동일)</p> <p>②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출로 보지 아니한다.</p> <p>1. 제19조----- ----- -----</p> <p>2. 제19조----- ----- --</p>	<p>조항변경 및 조문정비</p>

<p>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일부 금액을 이체(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한 다)되는 경우에는 제9조제3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체한다.</p> <p>④ ~ ⑤ (생략)</p> <p>⑥ 가입자가 일부 금액의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환매할 집합투자증권을 지정하여야 한다. 다만, 계좌 내에 지급 가능한 현금이 있는 경우 그 현금을 우선 이체한다.</p> <p><신 설></p>	<p>③ -----제12조-----</p> <p>④ ~ ⑤ (현행과 동일)</p> <p>⑥ 가입자가 일부 금액의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. 다만, 계좌 내에 지급 가능한 현금이 있는 경우 그 현금을 우선 이체한다.</p> <p>1.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가입자는 환매할 집합투자증권을 지정할 것</p> <p>2. 제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의 경우 가입자는 이체할 금액에 해당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을 매도할 것</p>	<p>상장지수집합 투자증권 매 매 도입</p>
<p>제16조(연금의 지급) ① ~ ④ (생략)</p> <p>⑤ (생략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제18조에 따라 계좌를 승계하는 경우 : 사망일 당시 가입자의 연금수령연차</p> <p>⑥ 가입자는 연금수령을 위하여 환매할 집합투자증권을 지정하여야 하며, 가입자의 지정이 없는 경우 회사는 계좌 내 집합투자증권의 비율에 비례하여 환매한다. 다만, 계좌 내에 지급 가능한 현금이 있는 경우 그 현금을 우선 인출한다.</p> <p><신 설></p> <p>⑦ 회사는 가입자가 연금수령 또는 연금외수령에 따라 인출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17조에 따라 세액을 원천징수한 후 가입자에게 지급한다.</p>	<p>제19조(연금의 지급) ① ~ ④ (현행과 동일)</p> <p>⑤ (현행과 동일)</p> <p>1. (현행과 동일)</p> <p>2. 제21조에 -----</p> <p>⑥ 가입자는 연금수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. 다만, 계좌 내에 지급 가능한 현금이 있는 경우 그 현금을 우선 인출한다.</p> <p>1.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가입자는 환매할 집합투자증권을 지정하고, 가입자의 지정이 없는 경우 회사는 계좌 내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비율에 비례하여 환매할 것</p> <p>2. 제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의 경우 가입자는 수령할 금액에 해당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을 매도할 것</p> <p>⑦ -----제20조에-----</p>	<p>조항변경 및 조문정비</p> <p>상장지수집합 투자증권 매 매 도입</p>
<p>제17조(회사의 원천징수) ① (생략)</p> <p>1. 연금수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으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원천징수하며 가입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한다. 다만,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, 제14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</p>	<p>제20조(회사의 원천징수) ① (현행과 동일)</p> <p>1. -----제17조에-----</p>	<p>조항변경 및 조문정비</p>

<p>로 인출하는 연금소득 또는 연금소득의 합계액(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및 제14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연금소득은 제외)이 연 1천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와세 대상으로 납세의무(제3항의 지방소득세 포함)가 종결된다.</p> <p>가. ~ 나. (생략)</p>	<p>----- -----제17조에----- ----- -----</p> <p>가. ~ 나. (현행과 동일)</p>	
<p>제18조~제19조 (생략)</p>	<p>제21조~제22조 (현행과 동일)</p>	<p>조항변경</p>
<p>제20조(수수료) 회사는 가입자의 계좌에 대하여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 다만, 가입자가 집합투자증권을 매매함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받는다.</p> <p><신 설></p>	<p>제23조(수수료 등) ① 회사는 가입자의 계좌에 대하여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</p> <p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집합투자증권을 매매함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받는다.</p> <p>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의 매매거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결제 시 가입자로부터 <별첨>에서 정하는 위탁수료를 받는다.</p> <p>④ 제3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의 매매거래 위탁 시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매매거래의 위탁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가입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.</p>	<p>조항변경 및 조문정비</p> <p>상장지수집합 투자증권 매 매 도입</p>
<p>제21조~제29조 (생략)</p>	<p>제24조~제32조 (현행과 동일)</p>	<p>조항변경</p>
<p>제30조(관계법규등 준용)</p> <p><신 설></p> <p>① ~ ② (생략)</p>	<p>제33조(관계법규등 준용) ①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에 따른다.</p> <p>② ~ ③ (현행과 동일)</p>	<p>상장지수집합 투자증권 매 매 도입 조문정비</p>
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이 약관은 202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.</p>	<p>부칙 추가</p>
<p><별첨></p> <p>1. (생략)</p>	<p><별첨></p> <p>1. (현행과 동일)</p>	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 설></p>	<p>2. 제8조 제4항 및 제21조 제3항의 “<별첨>에서 정하는” 위탁수수료는 다음과 같다.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5px 0;"> <p style="color: red;">홈페이지(www.myasset.com) >> 고객센터 >> 업무안내 >> 수수료 안내 >> 매매수수료</p> </div>	<p>상장지수집합 투자증권 매 매 도입</p>
<p>2. 제11조제2항의 “<별첨>에서 정하는” 연체이자는 다음과 같다. (생략)</p>	<p>3. 제14조제2항의 “<별첨>에서 정하는” 연체이자는 다음과 같다. (현행과 동일)</p>	<p>조문정비</p>
<p>3. 기타 특약사항</p>	<p>4. 기타 특약사항</p>	<p>조문정비</p>